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787호, 2011. 3.30,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02 - 2110 - 5186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제2조 삭제 <2009.11.2>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4.3.17>

제6조 삭제 <2004.3.17>

제7조(신기술의 인증대상) 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전문개정 2006.6.29]

제8조(신기술의 심사·평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
2. 삭제 <2006.6.29>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5. 신기술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9조(신기술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하려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

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2010.1.27>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인증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08.12.31>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12.31>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기술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년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6.29, 2008.12.31>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제10조(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기술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 삭제<2006.6.29>

③신기술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의 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④ 삭제<2006.6.29>

제11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4.12.30, 2006.6.29, 2006.9.4, 2007.9.10, 2008.12.31, 2009.8.18, 2009.11.2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8.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제12조(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그 밖의 공공단체

제13조(신기술의 지원요청)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강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2.3, 2006.6.29, 2006.10.27, 2008.12.31, 2009.4.30>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12.31, 2009.6.30, 2011.3.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명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전담부서를 말한다.<신설 2006.6.29, 2008.12.31>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2.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늘 확보되어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6.6.29>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6.6.29>

⑤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6.6.29>

⑥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개정 2006.6.29>

⑦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⑧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4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7조(협약의 체결방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항 각호의 기관 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9>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18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9조(출연금등의 관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작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간접경비 및 기술개발준비금
11.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를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④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⑤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12.31>

⑥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
2.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
3. 기관운영경비

4.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5.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⑨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6.6.29]

제21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2011.1.17>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21조의2(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용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 등의 제한사유
3. 물품 및 장비의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 등의 목적

[본조신설 2006.6.29]

제22조(국내개발기술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8, 2008.12.31>

제23조(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자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8.12.31>

1. 연구개발장비 임대업
2. 컴퓨터설비 자문업
3.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4. 자료처리업

5. 데이터베이스업
6.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7. 시장조사업
8.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9.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의 융자
 2.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전문연구인력·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지원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12.31>

제24조 삭제 <2009.4.30>

제24조의2 삭제 <2009.11.2>

제25조 삭제 <2009.11.2>

제26조 삭제 <2009.4.30>

제27조(신기술인증의 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명기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차 예고통보 : 20일
2. 제2차 예고통보 : 10일(제1차 예고통보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신기술인증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6.6.29, 2008.12.31>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6.6.29, 2008.12.31>

제28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에 관한 사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5. 삭제 <2009.11.2>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4.30>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12.31, 2009.4.30>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6.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그 부과금액이 8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31, 2009.4.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2787호, 2011. 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